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와 금융 정의

과세당국은 불법 복제된 CD를 구매하여 탈세자를 과세할 수 있는가?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세무대학원 교수

올해 초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과세당국은 한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독일 거주 고객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가 담긴 CD를 250만 유로에 사라는 제안을 받았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국가가 구매하는 경우 국가가 범죄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이렇게 취득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력이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논리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국가가 동 자료를 구매하여 탈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탈세자를 옹호하여 더 커다란 불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논리로 CD 구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결국 독일은 CD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매의 주체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를 250만 유로에 사기로 하고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과세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며, 동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스위스 은행의 안전을 믿고 오랜 기간 자산을 맡겨왔던 독일의 부유한 탈세자들은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과세당국이 해당 CD를 구입하여 자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스스로 경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탈세범으로 받게 되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리히텐슈타인뿐만 아니라 스위스도 전 세계의 조세 피난처로서 수명을 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 발발 이후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이윤추구 행위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가 세계 시민들에게 점차 확인되어 가면서 고객들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탈세를 조장해 온 이들 금융기관들의 행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명확해져 감에 따라 새로운 조세 피난처로의 금융 자본의 이동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5월

불법 복제 CD의 구매 제안

2010년 초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과세당국에 한 스위스 은행의 15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담긴 CD를 250만 유로에 사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 이 자료는 불법적으로 취득, 즉 복제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독일 거주자들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독일 과세당국에 약 2억 유로의 세금 추징을 가능케 해 주는 자료라고 평가되었다.

독일정부의 대응과 독일 국내의 반응

독일의 연정 정부를 구성하는 두 정당인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처음에는 이 정보를 구매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민당이 격렬히 반대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인 중산층 및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정파적인 태도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자민당의 일부 온건파들도 이러한 정부의 구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며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스위스 정부와 협상을 통한 정부 간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민당 일각에서는 CD 구매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민당(SPD), 녹색당(Gruene), 독일좌파당(Linke) 등 세 야당은 찬성하였고, 사민당 대변인은 스위스 등의 은행이 독일 고객을 겨냥하여 탈세를 도와주고 유도하는 것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또한 독일경찰노조 대표는 CD 구매에 반대하는 것은 조세 형사법들이 안주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여론은 약 59%가 CD 구매 찬성하였고, 약 37%가 훔친 정보를 구매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¹⁾

스위스 은행의 자산 운용 규모

스위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 약 1조 9000억 달러가 외국 자산이며, 이중 10% 정도가 독일에서 온 자산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금융 산업의 비중이 크고 전 세계의 운용 자산이 이곳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위스 은행의 고객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다.

자산가가 세계의 어느 금융 기관에 자산을 운용해 달라고 위탁할 때 지금까지 가장 선호되던 금융 기관이 스위스의 은행들이며 전 세계 운용 자산의 약 1/3이 스위스에서 관리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금융기관에서 관리, 운용되는 자산 약 7조 2000억 달러 중 27%인 3조 4000억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 약 1조 9000억 달러²⁾가 외국 자산이며, 이중 10% 정도가 독일에서 온 자산이라고 추산되고 있다.³⁾

이렇게 스위스는 전 세계의 자산 중에 큰 부분을 운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국민소득 창출에서 금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웃 나라인 독일에서는 금융 산업이 GDP의 약 4%를 차지하는 데 반해 스위스에서는 이 비중이 12%에 달한다. 이처럼 스위스에서 금융 산업의 비중이 크고 전 세계의 운용 자산이 이곳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위스 은행의 고객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다.

스위스 은행의 고객 정보 유지 조항의 역사

스위스 은행들의 고객비밀유지 조항은 은행법 제 4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종사자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이 조항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역사적으로 제 3제국 시절 히틀러가 추적했던 유대인들의 스위스 은행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정통한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이는 단지 동 조항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전에 이미 다른 이유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20세기 초까지 국제 자산 시장에서 의미가 없던 스위스가 1929년 이미 국제 자산 시장에서 두 번째 규모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1919년 독일이 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며 전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 수입이 필요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독일 내 자산가들이 자산을 스위스로 이동시킨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은행들이 자산의 불법적 월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동 조항은 1935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과세당국이 스위스에 숨겨진 자국 국민들의 자산과 소득에 대하여 과세 정보를 캐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32년 취리히 칸토날뱅크(Zuericher Kantonalbank)의 한 직원이 독일의 싱겐(Singen) 지역 세무서에 400여 명의 독일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과, 같은 해 바슬러 뱅크(Basler Bank)의 2000여 명의 프랑스 고객 정보가 프랑스 경찰의 손에 넘어간 일이다.⁵⁾ 스위스는 이에 자국의 은행에 대한 외국 고객의 선호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의 재무부 장관이 1933년 1월 26일(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기 4일 전) 고객비밀유지 조항을 입안하였고 이 법안은 1934년에 의회를 통과하고 1935년에 시행되었다.⁶⁾

스위스 은행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이 고객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스위스는 이웃 나라들과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스위스인들은 이 조항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취리히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72%의 스위스인들이 이 조항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⁷⁾ 대다수의 스위스인들은 은행의 비밀유지 조항을 알프스의 융프라우 봉이나 스위스 시계, 에멘탈러 치즈처럼 스위스와 동질화 시키는 경향도 있다. 스위스가 보인 가장 극단적인 반응 중 하나는 스위스의 우익정당 SVP의 정치가가 독일정부가 CD를 구입하는 경우 스위스가 가진 독일의 은행 고객 정보 중에서 독일의 공직자(공무원/판사 등)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또 이 비밀유지 조항에 대하여 특히 비판적이었던 독일 정당의 당직자들과 노동조합의 대표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스위스는 자국의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부당 취득한 과세정보를 구매하려는 독일 정치가들의 이중적 도덕성을 단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국제 자산 시장에서 의미가 없던 스위스가 1929년 이미 국제 자산 시장에서 두 번째 규모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1919년 독일이 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며 전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 수입이 필요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독일 내 자산가들이 자산을 스위스로 이동시킨 결과이다.

쇼이블레 연방재무부 장관은 조세의 형평성, (사회)국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과세 법률주의의 법집행 실현을 위하여 동 자료의 구매와 탈세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소리들에 묻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의 행위가 이웃 나라에서 탈세가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향후 스위스 은행은 이 비밀유지 조항 없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하며 스위스가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웃 나라 독일에서 과세당국이 불법적인 CD를 구매하는 것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원인 제공을 스위스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위스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앞으로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기하고 이웃 나라들의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과세 정보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찬반 의견

스위스 은행의 고객 자료를 (과거의) 은행 종사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독일의 과세당국에게 판매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국가가 긍정적으로 응하는 것이 합당한가, 즉 합법적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크게 갈렸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국가가 구매하는 경우 국가가 범죄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이렇게 취득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력이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가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국가의 윤리적 정당성에 무게를 둔다. 국가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기타의 폭력 집단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며, 어떤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이러한 경로로 취득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찬성 의견은 국가가 동 자료를 구매하여 탈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탈세자를 옹호하여 더 커다란 불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쇼이블레 연방재무부 장관은 조세의 형평성, (사회)국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과세 법률주의의 법집행 실현을 위하여 동 자료의 구매와 탈세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탈세 과정에서의 스위스 은행의 역할

스위스의 은행들은 이웃 나라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그들 나라의 과세당국에 대하여 굳게 비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산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로 옮기는 과정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독일의 과세당국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객자산 관리 규모가 큰 스위스의 은행 UBS가 스위스에 바로 인접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만 1만5000여 명의 고객을 관리하면서 특히 이러한 행위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주목하고 UBS 은행의 직원들에 대하여 탈세 조력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⁸⁾

스위스와 EU 국가들의 조세조약 협상

최근의 금융 위기는 재정이 악화된 선진국들의 과세당국이 해외의 탈세 및 조세 회피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독일은 대표적 조세 회피국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들에 대하여 은행비밀보장법 완화 및 고객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였고 국제 수준의 고객정보교류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주의 원칙을 지키던 이들 은행들은 해외 고객의 이탈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통적인 입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UBS는 최근의 소송에서 조세 회피처 제공 혐의로 미국국세청(IRS)에 거액의 벌금을 내는 사태에 이르자 마침내 미국에게 미국인 부유층 고객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고, 리히텐슈타인도 영국 정부에 조세 회피 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약속하였다. 독일정부도 지난번 선거에 따라 정권 교체로 물러난 슈타인브뤽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스위스를 줄기차게 압박하였고 스위스는 결국 12개 주요 OECD 국가들에게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쟁점 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의 자료를 복제한 은행 종사자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제재의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 종사자가 제공하는 비밀 자료의 성격과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의 적법성이다. 자료의 성격으로 보자면 그 자료에 담긴 비밀 정보는 전적으로 형사범 처벌 대상 정보이다. 이는 마피아가 뇌물을 제공한 정치인들의 명단과 같은 것으로 미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 같은 정보는 비밀을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이런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 정보도 법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비밀을 유출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한 은행 종사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다른 근거가 있다. 이는 비밀 정보를 유출해도 이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해, 즉 과세당국이 정당한 세금을 거두고 탈세자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종사자가 대의를 위하여 취한 행동이 아니라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댓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동기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은행 종사자의 개인적인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인 법 정의가 서느냐 하는 것이다.

설혹 은행 종사자의 행위가 형사 처분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받은 정보를 활용하는 독일 과세당국의 행위가 공범이며 불법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적인 기관은 법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독일 정부의 결정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연방재무부 장관, 그리고 CD의 구매를 제안 받은

불법 정보도 법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비밀을 유출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한 은행 종사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다른 근거가 있다. 이는 비밀 정보를 유출해도 이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해, 즉 과세당국이 정당한 세금을 거두고 탈세자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당국은 CD를 구매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논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만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는 끝난 사안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미 같은 사례를 수년 전에 경험한 바 있다. 독일연방정보부(BND)는 2002년 리히텐슈타인 LGT의 직원에게 450만 유로를 지불하고 리히텐슈타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독일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구매하여 700여 명의 탈세자 정보를 파악하고 추징했다.

구매의 주체 -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독일의 세 개의 주정부는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담긴 CD의 구매를 제안 받았으며 그중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이미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되 CD를 사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고, 보수적인 기민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중산층과 기업가들에게 우호적이며, 세무 조사의 강도가 북부의 주들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독일의 세 개의 주정부는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담긴 CD의 구매를 제안 받았으며 그중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이미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되 CD를 사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 CD를 250만 유로에 구매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구매 협상은 제공자의 요청으로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다. 판매자는 2억 유로의 세금 추징이 가능한 정보라고 평가하였고, 과세당국도 평가 결과 그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궁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Credit Suisse 은행인 것으로 밝혀졌다.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CD를 구입해도 과세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며 동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CD 대금을 지급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판매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판매자는 비공개적인 구매를 원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250만 유로를 지불하면서 이 금액에 대하여 10%의 일괄세율을 적용해 원천과세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¹⁰⁾

비용 부담

250만 유로의 구매 비용은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쾰니히슈타인식 분배 방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세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지를 미리 정하여 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 간에는 인구와 세수입에 따라 주정부 전체에 할당되는 비용을 배분하는데 구체적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21.3%를, 그리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12.8%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¹¹⁾

추가 경정 신고의 흥수

그동안 스위스 은행의 안전을 믿고 오랜 기간 자산을 맡겨왔던 독일의 고객들, 즉 부유한 탈세자들은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과세당국이 해당 CD를 구입하여 자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스스로 경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탈세범으로 받게 되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과거에 내지 않은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6%의 이자를 추가해서 납부하면 된다. 2010년 2월 중순, 독일 세무서들의 팩스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는 불안한 탈세자들이 보내는 추가 경정 신고서가 계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0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주정부인 함부르크에서만도 2월의 어느 3일 동안 78건의 경정 신고서가 접수되었다.¹²⁾ 현재 독일 전역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고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가 경정 신고에 따른 세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중에 조세형법(탈세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변호사들이 가장 호경기를 누리면서 높은 자문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은행을 상대로 한 고소 사태

아직은 스위스의 은행들에 대한 고객들의 고소와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알려진 바 없으나 수년 전에 있던 리히텐슈타인의 경우와 같이 고객들의 고소와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독일의 한 고객이 리히텐슈타인 LGT에 대한 소송에서 730만 유로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 본래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한 이 고객은 소송을 더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리히텐슈타인 공작의 소유로 알려진 리히텐슈타인 LGT는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유한 고객을 가진 금융기관이다. 독일의 한 기업가가 이 기관을 신뢰하여 자산을 기탁하였는데, 이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는 2007년 독일 내무부 산하 정보기관인 독일연방정보부에 갑자기 팔렸다. 이로 인해 이 기업인은 탈세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770만 유로를 내고서야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었다. 또한, 별도로 1190만 유로를 세금 추징금으로 냈다. 이 기업인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청구한 결과, 리히텐슈타인 법정은 리히텐슈타인 LGT가 이 기업인에게 730백만 유로의 피해 보상을 해 주도록 결정하였으나 세금 납부 부분에 대한 보상은 탈세자 고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즉 730만원의 피해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적시에 자문(고객정보 도난 상황에 대한 즉각적 통보)을 해서 추가 경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고 조세 채무와 가산금은 보상 대상인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금융 자본주의에 주는 함의성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 하나는 윤리적

스위스의 은행들에 대한 고객들의 고소와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알려진 바 없으나 고객들의 고소와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독일의 한 고객이 리히텐슈타인 LGT에 대한 소송에서 730만 유로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

주체로서 국가와 인간의 행위를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행위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윤리적 규범을 각각 해치게 될 때, 국가는 두 가지 중에서 피해가 적은 것을 택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다소의 윤리적 저촉(부당취득 과세정보의 구매)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로 인한 국가의 윤리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공공재의 훼손 정도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시사점은 이번 사건으로 리히텐슈타인뿐만 아니라 스위스도 전 세계의 조세 피난처로서 수명을 다해간다는 점이다.¹³⁾ 향후 스위스 은행과 고객의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세계의 검은 돈은 케이만 군도, 싱가포르 등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의 발발 이후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이윤 추구 행위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가 세계 시민들에게 점차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객들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탈세를 조장해 온 이들 금융기관들의 행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명확해져 감에 따라 새로운 조세 피난처로의 금융 자본의 이동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 후 주 |

- 1) Frankfurter Rundschau, 2월 5일.
- 2) Spiegel, 2월 8일자 18쪽.
- 3) Frankfurter Rundschau, 2월 9일.
- 4) Frankfurter Rundschau, 2월 9일.
- 5) Frankfurt Allgemeine Zeitung, 2월 16일.
- 6) Frankfurter Rundschau, 2월 9일.
- 7) Frankfurter Rundschau, 2월 9일.
- 8) Frankfurter Rundschau, 2월 6일.
- 9) Frankfurter Rundschau, 2월 5일.
- 10) Spiegel, 2월 13일자 26쪽.
- 11)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월 16일.
- 12)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월 15일.
- 13)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월 9일.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0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